

제 4 차 도 서 총 합 개 발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 민 등 의 의 견 수 렴 결 과 및 반 영 여 부

2018. 01

1.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토록 함.

<표 1.1 -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 분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1.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가.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요

- 계획수립기관 : 전라남도
- 승인기관 : 행정안전부

<표 1.1.1 - 1>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요

의견수렴 이행사항	이행방법	이행수단	대상범위	일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공고신문	무등일보	지역주민	2017. 09. 08
		남도일보	지역주민	2017. 09. 08
	정보통신망	전라남도 및 11개 시·군 홈페이지	지역주민	2017. 09. 08 ~ 2017. 09. 30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지역주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비치	진도군 수산지원과	지역주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조도면사무소	지역주민	2017. 9. 21. 10:00

나.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세부 내용

(1) 공고문

전라남도 공고 제2017 - 776호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8.

전라남도지사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범위
 - 시간적 범위(계획기간) : 2018 ~ 2027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11개 시·군, 215개 도서
- 계획수립 및 승인 기관
 - 계획수립 : 전라남도
 - 승인기관 : 행정안전부
- 시행 기관 : 11개 시·군

2. 공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7. 9. 8. ~ 2017. 9. 30.(23일간)
- 공람장소 :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목포시 해양항만과, 여수시 섬자원개발과, 고흥군 해양수산과, 보성군 해양수산과, 강진군 해양산림과, 해남군 해양수산과, 무안군 해양수산과, 영광군 해양수산과, 완도군 지역개발과, 진도군 수산지원과, 신안군 도시개발과
- 정보통신망 : 전라남도 및 11개 시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시

시군명	주민설명회 일시	장 소	비고
목포시	2017. 9. 19. 14:00	목포시청 소회의실	
여수시	2017. 9. 18. 14:00	여수시청 문수청사 3층 회의실	
고흥군	2017. 9. 20. 14:00	도양읍사무소	
보성군	2017. 9. 27. 11:00	별교읍사무소	
강진군	2017. 9. 20. 14:00	도암면사무소	
해남군	2017. 9. 15. 15:00	상마마을회관	
무안군	2017. 9. 27. 15:30	탄도마을회관	
영광군	2017. 9. 26. 10:00	낙월면사무소	
완도군	2017. 9. 22. 14:00	완도군청 대회의실	
진도군	2017. 9. 21. 10:00	조도면사무소	
신안군	2017. 9. 21. 14:00	압해읍사무소	

3.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련된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양항만과(☎061-286-686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신문

무등일보

2017년 09월 08일 (금)
공고/고시 02면

전라남도 공고 제2017-776호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전라남도지사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범위 : 시군별 범위(계획기간) : 2018년 - 2027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11개 시·군, 215개 도서
- 계획수립 및 승인 기관 : 계획수립 : 전라남도 - 승인기관 : 행정안전부
- 시행기간 : 11개 시·군

2.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7. 9. 8 - 2017. 9. 30 (23일간)
- 공 람 장 소 : 전라남도 해양발전과, 목포시 해양발전과, 여수시 섬거점발전과, 고흥군 해양수산과, 보성군 해양수산과, 강진군 해양수산과, 해남군 해양수산과, 무안군 해양수산과, 영광군 해양수산과, 완도군 지역개발과, 진도군 수산지원과, 신안군 도시개발과
- 정보통신망 : 전라남도 및 11개 시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주민청문의 계획 장소 및 일시

시군명	주민설명회 일시	장 소	비고
목포시	2017. 9. 19. 14:00	목포시청 소회의실	
여수시	2017. 9. 18. 14:00	여수시청 분수청사 3층 회의실	
고흥군	2017. 9. 30. 14:00	도양읍사무소	
보성군	2017. 9. 27. 11:00	별교읍사무소	
강진군	2017. 9. 20. 14:00	도암면사무소	
해남군	2017. 9. 15. 18:00	상마마을회관	
무안군	2017. 9. 27. 15:30	탄도마을회관	
영광군	2017. 9. 26. 10:00	낙월면사무소	
완도군	2017. 9. 22. 14:00	완도군청 대회의실	
진도군	2017. 9. 21. 10:00	초도면사무소	
신안군	2017. 9. 21. 14:00	합해읍사무소	

3.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공람회 개최여부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분람기간으로 부터 7일 이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양발전과(☎061-286-6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X 132 mm

무등일보

남도일보

2017년 09월 08일 (금)
종합 02면

전라남도 공고 제2017-776호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8.

전라남도지사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범위 : 시군별 범위(계획기간) : 2018년 - 2027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11개 시·군, 215개 도서
- 계획수립 및 승인 기관 : 계획수립 : 전라남도 - 승인기관 : 행정안전부
- 시행기간 : 11개 시·군

2.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7. 9. 8 - 2017. 9. 30 (23일간)
- 공 람 장 소 : 전라남도 해양발전과, 목포시 해양발전과, 여수시 섬거점발전과, 고흥군 해양수산과, 보성군 해양수산과, 강진군 해양수산과, 해남군 해양수산과, 무안군 해양수산과, 영광군 해양수산과, 완도군 지역개발과, 진도군 수산지원과, 신안군 도시개발과
- 정보통신망 : 전라남도 및 11개 시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주민청문의 계획 장소 및 일시

시군명	주민설명회 일시	장 소	비고
목포시	2017. 9. 19. 14:00	목포시청 소회의실	
여수시	2017. 9. 18. 14:00	여수시청 분수청사 3층 회의실	
고흥군	2017. 9. 30. 14:00	도양읍사무소	
보성군	2017. 9. 27. 11:00	별교읍사무소	
강진군	2017. 9. 20. 14:00	도암면사무소	
해남군	2017. 9. 15. 18:00	상마마을회관	
무안군	2017. 9. 27. 15:30	탄도마을회관	
영광군	2017. 9. 26. 10:00	낙월면사무소	
완도군	2017. 9. 22. 14:00	완도군청 대회의실	
진도군	2017. 9. 21. 10:00	초도면사무소	
신안군	2017. 9. 21. 14:00	합해읍사무소	

3.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공람회 개최여부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분람기간으로 부터 7일 이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해양발전과(☎061-286-6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X 99 mm

남도일보

(3) 정보통신망

도정소식

- 공지사항 >
- 보도자료 >
- 고시/공고 >
- 전남도보 >
- 시험정보 >
- 채용경보 >

고시/공고

인쇄하기 SNS파가기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전라남도 고시/공고입니다.
생명의 땅 전남새물 도보는 전남도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파일	조회
11488	중동-중앙아시아(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시장개척단 파견 기업 ...	대변인	2017-09-14	📄	389
11487	2017년도 전라남도 으뜸강인 선발 공고	대변인	2017-09-14	📄	353
11486	2017년 전라남도-시군 연계협력 일자리사업 지역과 주민이 행복한 '전남행...	대변인	2017-09-14	📄	471
1148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변인	2017-09-13	📄	436
11484	2017년 제1회 전라남도 목공예 경진대회 공고	대변인	2017-09-12	📄	334
11483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어보 구울비,유통·판매 사업자 모집' 재공고...	대변인	2017-09-11	📄	319
11482	2017년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 공고	대변인	2017-09-11	📄	306
1148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대변인	2017-09-11	📄	357
11480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	대변인	2017-09-08	📄	474
11479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임주업체 모집' 공고	대변인	2017-09-07	📄	463

국가심장 알아보기

통합검색

참여와 소통
도정소식
정보공개
전자민원
분야별 정보
전남소개
관광문화
전체메뉴보기

도정소식

- 공지사항 >
- 보도자료 >
- 고시/공고 >
- 전남도보 >
- 시험정보 >
- 채용경보 >

고시/공고

인쇄하기 SNS파가기

HOME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	2017-09-08
공람 공고.hwp 15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주민의견 제출서.hwp 14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초안 요약서.hwp 43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전라남도 공고 제2017 - 776호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주민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8.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5 -

국민참여

National participation

협의진행현황

평가항목 결정내역 공표

평가서 초안 공람

사용자지원

.GSA

.FAQ

.공지사항

평가서 초안 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시/도)

 사업영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 검색결과 : 3,791건

번호	협이기관	사업명	초안공람기간
3761	환경유역환경청	화성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응도지역, 지구단위계획...	2017.04.14 ~ 2017.04.27
3760	환경유역환경청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2017.09.05 ~ 2017.09.19
3759	원주지방환경청	(주)코스메카코리아 지구단위계획(변경)	2017.07.24 ~ 2017.08.07
3758	환경유역환경청	안성 앞성 산경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	2017.07.03 ~ 2017.07.17
3757	환경부	안양 관향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2017.09.08 ~ 2017.10.10
3756	환경유역환경청	오산 오산2구역 도시관리계획(응도지역, 지구단위계획...	2017.09.15 ~ 2017.09.29
3755	환경유역환경청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2017.09.08 ~ 2017.10.13
3754	공강유역환경청	세종 진의면 산정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2017.09.20 ~ 2017.10.17
3753	공강유역환경청	(주)빙그레 논산공장 논산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	2017.09.07 ~ 2017.09.29
3752	환경부	제4차 진라남도 도서융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2017.09.08 ~ 2017.09.30

초안공람

주인의견수렴

■ 협의업무 담당

협이기관	환경부	담당자	조현형
담당부서		E-mail	star4588@korea.kr
전화번호	02-	Fax번호	02-

■ 초안공람

초안	제1장 요약문.pdf 제2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I(1~4).pdf 제2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II(5~10).pdf 제2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III(11, etc).pdf 제3장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pdf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df 제5장 지역개황.pdf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pdf 제7장 계획의 적정성.pdf 제8.1장 입지의 타당성.pdf 제8.2.1장 자연환경의보전-생물다양성서식지보존(동식물상).pdf 제8.2.2장 자연환경의보전-생물다양성서식지보존II(자연환경자산).pdf 제8.2.3장 자연환경의보전-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pdf 제8.2.4장 자연환경의보전-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pdf 제8.2.5장 자연환경의보전-수환경의 보전 I(수질).pdf 제8.2.6장 자연환경의보전-수환경의 보전 II(하천환경).pdf 제8.3.1장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 부합성 I(기상).pdf 제8.3.2장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 부합성 II(대기질).pdf 제8.3.3장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 부합성 III(토양).pdf 제8.3.4장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 부합성 IV(소음진동).pdf 제8.3.5장 생활환경의 안정성-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친환경적자원순환).pdf 제8.3.6장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pdf 제8.4.1장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토지이용).pdf 제8.4.2장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인구주거산업.pdf 제9장 종합평가 및 결론.pdf 제10장 부록(EIASS).pdf	초안공람기간	2017.09.08 ~ 2017.09.30
초안 공고일	2017.09.08		
공람장소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외 11개소		
설명회장소	목포시청 소회의실 외 10개소		
설명회일시	2017.09.19 외 10개	의견제출기간	2017.09.08 ~ 2017.10.07
부서명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전화번호	061-286-6863

(4)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참사 일 령	제4차 도시통합개발계획		
참사 일 위 직	권리남도 11개 시군, 215개도(사)원도군, 33개도(사)		
참사 일 자	권리남도(사)원도군수		
참 명 회 장 스	최도원사무소 회차실	일 시	2017년 09월 21일(목) 10:00
참 변 성 명	주 소	서명	
최도원	최도원 40-83	최도원	
김정순	맹북죽연 9-2	김정순	
송기영	전남도길 9	송기영	
박정현	원도 11	박정현	
김민석	원도 1	김민석	
송백호	권리남도 32	송백호	
황승훈	문우 17	황승훈	
김광현	전남도길 29	김광현	
최정석	산정 8-21	최정석	
김지우	40-73-10	김지우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참사 일 령	제4차 도시통합개발계획		
참사 일 위 직	권리남도 11개 시군, 215개도(사)원도군, 33개도(사)		
참사 일 자	권리남도(사)원도군수		
참 명 회 장 스	최도원사무소 회차실	일 시	2017년 09월 21일(목) 10:00
참 변 성 명	주 소	서명	
최도원	최도원	최도원	
김정순	맹북죽연 9-2	김정순	
송기영	전남도길 9	송기영	
박정현	원도 11	박정현	
김민석	원도 1	김민석	
송백호	권리남도 32	송백호	
황승훈	문우 17	황승훈	
김광현	전남도길 29	김광현	
최정석	산정 8-21	최정석	
김지우	40-73-10	김지우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참사 일 령	제4차 도시통합개발계획		
참사 일 위 직	권리남도 11개 시군, 215개도(사)원도군, 33개도(사)		
참사 일 자	권리남도(사)원도군수		
참 명 회 장 스	최도원사무소 회차실	일 시	2017년 09월 21일(목) 10:00
참 변 성 명	주 소	서명	
최도원	최도원 40-83	최도원	
김정순	맹북죽연 9-2	김정순	
송기영	전남도길 9	송기영	
박정현	원도 11	박정현	
김민석	원도 1	김민석	
송백호	권리남도 32	송백호	
황승훈	문우 17	황승훈	
김광현	전남도길 29	김광현	
최정석	산정 8-21	최정석	
김지우	40-73-10	김지우	

1.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수렴 결과

1.2.1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 11개 시·군 : 주민의견 없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구 분	질의내용	답변내용
1	<p><여미리 이장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양장 등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 생활환경장소를 고려한 부지면적을 계획 요구 	<p><환경팀 나양채 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시 물양장 등의 면적이 생활환경장소면적을 고려되도록 계획을 수립함.
2	<p><신전리 이장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전리 주변의 방파제 개보수 공사계획을 반영 요구 	<p><환경팀 나양채 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신전리 주변의 방파제 개보수공사 계획을 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고려함.

1.2.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반영여부

가.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반영여부

(1) 환경부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I. 총괄		
	○ 전라남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세부 개발계획별 입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 본안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반영】 전라남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세부 개발계획별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입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였음.	
	○ 각 도서별 개발·정비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환경영향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세부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반영】 각 도서별 개발 및 정비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후 실시설계시 세부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예측을 실시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 평가서 본안작성 시 세부 개발계획별로 향후 환경영향평가(전략 또는 소규모) 대상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반영】 세부 개발계획별 향후 환경영향평가(전략 또는 소규모 포함)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II. 항목별 협의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미수립시를 비교하여 형식적 대안 비교가 이루어졌는 바, 본 계획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각각의 대안 비교를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반영】 본 계획에 따른 대표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각 계획에 대한 대안 비교를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 개발계획 내용에는 「도서개발 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제시되어야 함.	【반영】 개발계획 수립 시 「도서개발 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겠음.		
○ 평가서에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대부분의 세부 개발계획이 사업 필요성이 낮으므로 계획지역 등록 어선수 등을 기초로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 되어야 함.	【반영】 계획도서의 어선수 등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주민의견 및 숙원사업 등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 현황과 사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확대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현황 및 사업규모(진도군 사례 참조)를 제시하여야 함. 	<p>【반영】확대된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현황 및 사업규모를 제시하여 사업지 현황과 사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p>	
	<p>○ 자동차 통행편의를 위해 계획된 일주도로의 경우 취락지구 간 연결성 확보, 관광지 간 연결성 확보, 항구와 취락지구 혹은 관광지 간 연결성 확보 등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p>【반영】해당 도서별 자동차 통행편의를 위해 계획된 일주도로의 경우 취락지구 간 연결성 확보, 관광지 간 연결성 확보, 항구와 취락지구 혹은 관광지 간 연결성 확보 등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서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기 개설된 도로의 확장 및 포장 계획을 수립하였음.</p>	
	<p>○ 다음의 개발계획은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을 재검토 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여야 함.</p>	<p>【반영】제시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업을 재검토 하여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음.</p>	
	<p>(1) 목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달리도 방파제 조성) 해수유동 변화로 규모 축소 	<p>【반영】당초 방파제 계획을 L=100m→60m 로 규모 축소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11. (장좌도 선착장 및 물양장 조성)해안침식 유발로 사업 재검토 	<p>【반영】선착장은 부유식 부잔교로 설치변경 - 물양장은 내륙으로 위치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고하도 해안산책로 조성)자연 해안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육상 측으로 계획 	<p>【반영】해안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륙으로 노선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해수풀장 주변 환경개선) 자연 해안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 	<p>【반영】기 설치된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외달도 등대 보행로) 조간대 암반 훼손 발생으로 사업 재검토 	<p>【반영】보행로를 해안데크로 설치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충무공유적지 진입도로 확장 및 경관조성)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훼손에 따른 사업 재검토 	<p>【반영】기 설치된 도로를 내륙으로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달리 2구 해안도로 개설)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훼손에 따른 사업 재검토 	<p>【반영】해안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륙으로 노선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달리도 선착장~쪽박섬간 연결도로 개설) 사빈해안 훼손에 따른 사업 재검토 	<p>【반영】기존노선 비포장도로 포장 및 정비</p>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2) 여수시		
	- 5.(남면 화태리 마죽항 위 선착장 연장) 해수유동 변화로 사업 재검토	【반영】해수유통구 설치로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	
	- 9.(화정면 개도 여석 선착장 연장 및 파라펫 설치)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규모 축소	【반영】선착장 연장을 축소하여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최소화 - L=60m→50m	
	- 12.(화정면 여자리 마파선착장 정비 및 파제제 설치)해수유동 변화로 규모 축소	【반영】선착장 연장을 축소하여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 - L=200m→160m	
	- 13.(화정면 여자리 대동 선착장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규모 축소	【반영】선착장 연장을 축소하여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최소화 - L=20m→15m	
	- 17.(소경도 도선 선착장 뒤편 방파제 설치) 자연해안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치로 입지 재선정	【반영】기존 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위치 변경	
	- 20.(남면 직포마을 남방파제 연장)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를 위한 규모 축소	【반영】방파제 연장을 축소하여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 - L=100m→80m	
	- 21.(남면 직포마을 북방파제 연장) 직포해수욕장 해안침식 영향에 따른 사업 재검토	【반영】방파제 연장 축소 - L=50m → 40m - 실시설계 시 해안침식에 따른 영향 검토 후 추가적인 저감방안 마련	
	- 23.(남면 송고마을 방파제 연장)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방파제 연장 최소화	【반영】방파제 연장을 축소하여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최소화 - L=50m→40m	
	- 24.(남면 여천마을 방파제 연장) 방파제 연장 시 내측 방파제 일부 철거방안 수립	<미반영>태풍 등 기상악화 시 선박안전을 위한 이중보호를 위해 내측방파제 유지를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음.	
	- 25.(남면 대유마을 방파제 연장)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방파제 연장 최소화	【반영】방파제 연장을 축소하여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최소화 - L=20m→15m	
	- 36.(남면 화태리 마죽항 방파제 정비) 방파제 위치 조정 시 기존 방파제 제거 검토	<미반영>마죽항이 좁아 현재 어선을 정박할 공간부족으로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기존 방파제 존치	
	- 39.(남면 화태치안센터 앞 접안시설 설치) 접안시설 설치에 따른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시설설치 최소화	【반영】해수유통구 설치로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최소화	
- 40.(남면 화태 월전마을 외길 호안도로 설치)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방안 검토	【반영】실시설계 시 자연훼손이 없도록 최대한 기존 이동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것임.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 41.(남면 횡간도 방파제 연장) 해수유동 변화로 규모 축소	【반영】해수유통구 설치로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	
	- 45.(화정면 개도 화산 방파제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사업 재검토	【반영】해수유통구 설치로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최소화	
	- 49.(화정면 여자리 대동 방파제 설치)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사업 재검토	【반영】해수유통구 설치로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최소화	
	- 51.(화정면 여자리 산 142번지 앞 방파제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사업규모 최소화	【반영】방파제 연장을 축소하여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최소화 - L=50m→40m	
	- 54.(화정면 추도 선착장 및 호안도로 정비) 자연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위한 기존 선착장 정비방안 수립 및 시설 설치 최소화	【반영】선착장 연장 축소 - L=50m→40m - 기존 선착장 유지, 보강	
	- 79.(화정면 상화 호안도로 개설 및 방파제 보강) 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호안도로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반영】실시설계 시 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육지부를 이용하여 개설 계획	
	- 80.(화정면 상하여객선 옆 호안도로 개설) 양호한 암반의 자연해안 훼손이 크므로 사업 재검토	【반영】해안측 양호한 암반의 훼손이 없도록 육지부를 이용하여 호안도로 개설계획	
	- 85.(화정면 적금 호안도로 정비공사) 자연해안 지역을 배제한 인공해안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자연해안지역의 경우 해안과 이격하는 방안 검토	【반영】현재 이용하고 있는 호안도로에 포장만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자연해안지역의 훼손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89.(화정면 개도 신흥 체험장 조성 및 등덕골 호안도로 연장)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이 크므로 발생하는바, 사업 재검토	【반영】호안도로 일부를 연장하나 모래밭 체험장 조성사업이므로 자연해안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설계를 실시할 것임.	
	- 91.(화정면 제도 조금날 선착장 호안도로 개설) 자연해안지역을 배제한 도로개설방안 검토	【반영】해안지역을 최소화하고 육지부를 이용하여 호안도로 개설 계획	
- 137.(삼산면 동도 탐방로 조성) 해안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둘레길 조성방안 검토	【반영】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실시설계 시 해안 및 식생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데크 등을 설치하여 시행하겠음.		
- 146.(화정면 사도 관광기반시설 설치) 암반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배제하는 방안 검토	【반영】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므로 암반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배제하겠음.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 155.(남면 두포마을 해안도로 개설) 자연해안지역을 배제한 도로개설 검토	【반영】해안지역을 최소화하고 육지부를 이용하여 호안도로 개설 계획	
	- 172.(화정면 상화 마을안길 보완) 양호한 암반의 자연해안 훼손이 크게 발생되므로 사업재검토	【반영】기존 마을안길을 보완하는 사업이므로 양호한 암반의 자연해안 훼손 없이 조성할 것임	
	- 175, 176(화정면 둔병도 및 적금도 마을진입로 개설) 자연해안지역을 배제한 도로개설 검토	【반영】해안지역을 최소화하고 육지부를 이용하여 호안도로 개설 계획	
	- 181(삼산면 거문도 변촌~장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자연해안지역을 배제한 도로개설 검토	【반영】기존 도로와 연계하여 개설하고 자연암반해안의 훼손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음.	
	(3) 고흥군		
	- 5.(득량도 선착항 선착장 접안시설 및 방파제 보강) 방파제 연장의 경우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소화방안 검토	【반영】기 설치된 접안시설 정비 및 방파제 보강	
	- 6.(시산도 석금 소규모항 및 해안도로 정비) 자연 암반 해안지역에 대한 도로정비 재검토	【반영】기 설치된 접안시설 및 해안도로를 정비	
	- 16.(죽도 물양장 조성) 자연암반지역에 대한 물양장 설치 재검토	【반영】기 설치된 물양장이 현재 매우 협소하므로 당초 L=80m → 60m로 규모 축소 변경	
	- 18.(사양도 선착항 방파제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방파제 연장 최소화 검토	【반영】당초 방파제 연장 L=50m → 30m, 20m로 분리설치 - 추가 연장된 방파제는 해수유통구 설치	
	- 30.(수락도 도선 건조사업) 사빈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 재검토	【반영】도선건조사업에 해당함.	
	- 32.(득량도 선창 해안 일주도로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	【반영】해안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륙으로 노선변경	
	- 33.(득량도 관청 해안 일주도로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	【반영】당초 L=1,200m → 400m 축소 변경 - 해안데크로 공사방법 변경계획	
	- 34.(시산도 해안 일주도로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	【반영】해안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륙으로 노선변경	
- 35.(하화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	【반영】기 설치된 도로 및 해안데크를 정비 - 잔여구간은 해안데크로 공사방법 변경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 38.(연흥도 해안경관도로 정비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	【반영】당초 L=800m→300m축소변경 - 해안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륙으로 노선변경 및 축소	
	- 39.(애도 해안경관도로 정비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	【반영】해안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륙으로 노선변경	
	- 42.(우도 바닷길 보강사업) 갯벌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수립 제시	【반영】기설치된 도로를 보수.보강	
	- 51.(사양도 선창 해안도로 개설)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	【반영】해안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내륙으로 노선변경	
	(4) 보성군		
	- 8.(목섬 어장 진입로 개설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	<미반영> 장도 남측의 콘크리트도로와 연계하여 목섬 주변의 어장(양식장)까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지역주민이 200m를 요청하였으나 자연해안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장입구까지 180m로 계획함	
	(5) 강진군		
	- 5.(가우도 둘레길 조성) 둘레길 조성 시 자연해안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안 제시	【반영】기조성된 생태탐방 유지 관리	
	- 6.(보행자 목재데크 설치) 목재데크 설치 시 자연해안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방안제시	【반영】마을앞 개설되어 있는 도로내에 목재데크 설치	
	(6) 해남군		
	- 1.(화산 상마도 방파제 설치)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방안 제시	【반영】방파제 연장을 축소하고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최소화- L=150m→120m	
	- 4.(화산 상마도 물양장 조성) 자연암반해안 훼손을 야기하는 물양장 조성 재검토	【반영】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역 숙원사업으로 조성이 필요하며, 자연암반해안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역계를 변경함.	
	- 5.(화산 중마도 방파제 설치) 해수유동변화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규모 축소방안 제시	【반영】방파제 연장을 축소하고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 L=100m→80m	
- 7.(화산 하마도 방파제 설치)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0m로 계획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방안 제시	【반영】방파제 연장을 축소하고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최소화- L=50m→40m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7) 무안군		
	- 1.(탄도 호안 정비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을 야기하는 호안 설치 재검토	【반영】해안유실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으로 연안유지를 위해 호안을 설치하여야 함.	
	- 5.(탄도 해안탐방데크 설치) 해안탐방데크 설치 시 자연해안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방안 제시	【반영】기 설치구간을 연장하여 해안데크로 설치	
	(8) 완도군		
	- 11.(평일~신구지구 소규모 어항정비사업)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설치규모 최소화	【반영】평일~신수지구 소규모 어항정비사업 - 연장축소(L=90m →70m)	
	- 12.(평일~척치지구 소규모 어항정비사업)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설치규모 최소화	【반영】평일~척치지구 소규모 어항정비사업 - 연장축소(L=60m →30m)	
	- 13.(평일~월송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반영】평일~월송리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50m →40m)	
	- 14.(평일~장정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반영】평일~장정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65m →55m)	
	- 16.(평일~사동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반영】평일~사동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85m →75m)	
	- 17.(평일~장원지구 소규모 어항정비)해수유동 변화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설치규모 최소화	【반영】평일~장원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60m →50m)	
	- 18.(평일~충동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설치규모 최소화	【반영】평일~충동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62m →50m)	
	- 21.(노화~고막리 선착장 시설) 해수유동 변화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선착장 연장	【반영】노화~고막리 선착장 시설 - 연장축소(L=83m →65m)	
	- 24.(노화~중도리 선착장 연장) 해수유동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착장 연장 규모 최소화	【반영】노화~중도리 선착장 연장 - 연장축소(L=120m →90m)	
	- 25.(노화넙도~선착장 연장)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하기 위한 선착장 연장 규모 최소화	【반영】노화넙도~선착장 연장 - 연장축소(L=182m →150m)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 26.(서넙도~소규모 어항시설)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반영】서넙도~소규모 어항시설 - 연장축소(L=175m →140m)	
	- 29.(마안도 선착장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착장 연장	【반영】마안도 선착장 연장 - 연장축소(L=65m →55m)	
	- 30.(어룡도 소규모 어항시설) 해수유동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착장 연장 규모 최소화	【반영】어룡도 소규모 어항시설 - 연장축소(L=120m →90m)	
	- 33.(고마도 선착장 확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착장 연장	【반영】고마도 선착장 확장 - 연장축소(L=130m →25m)	
	- 35.(흑일도 호안도로 시설) 자연암반해안 훼손을 야기하는 호안도로 연장 재검토	【반영】자연암반해안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연장 축소함. - 연장축소(L=1,200m →900m)	
	- 37.(백일도 방파제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반영】백일도 방파제 연장 - 연장축소(L=45m →30m)	
	- 38.(서화도 방파제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반영】서화도 방파제 연장 - 연장축소(L=50m →20m)	
	- 41.(청산도 소규모 어항정비) 해수유동 변화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선착장 연장	【반영】청산도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260m →50m)	
	- 44.(소안도 이월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해수유동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항시설 연장 규모 최소화	【반영】소안도 이월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180m →140m)	
	- 48.(소안도~진산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설치 규모 최소화	【반영】소안도~진산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360m →180m)	
	- 52.(구도~구도 소규모 어항정비) 해수유동 변화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선착장 연장	【반영】구도~구도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80m →60m)	
- 53.(금당도~차우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시키는 방파제 설치 재검토	【반영】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 하도록 소규모 축소함 - 연장축소(L=30m →20m)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 56.(금당도~신흥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율을 저하시키는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반영】금당도~신흥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90m →70m)		
	- 62.(보길도~보길 여항리 선착장 설치) 자연해안에 대한 선착장설치 재검토	【반영】자연해안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선착장 연장을 축소함 - 연장축소(L=700m →83m)		
	- 64.(보길도~보길 선백도 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율을 저하시키는 방파제 설치 최소화	【반영】보길도~보길 선백도 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 연장축소(L=110m →90m)		
	- 65.(보길도~보길 월송리 선착장 설치) 항내 해수교환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착장 설치	【반영】보길도~보길 월송리 선착장 설치 - 연장축소(L=100m →78m)		
	- 66.(보길도~보길 정동리 소규모 어항시설) 항내 해수교환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착장 설치	【반영】보길도~보길 정동리 소규모 어항시설 - 연장축소(L=80m →60m)		
	- 70.(보길도~보길 동리 물양장 설치) 자연해안을 훼손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물양장 설치	【반영】보길도~보길 동리 물양장 설치 - 면적축소(A=300㎡ →250㎡)		
	- 71.(예작도~보길 예작 소규모 어항시설) 자연해안을 훼손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물양장 설치	【반영】예작도~보길 예작 소규모 어항시설 - 연장축소(L=82m →60m)		
	- 97.(노룩도~노룩도 진입도로) 양호한 암반 자연해안을 훼손시키는 도로사업 재검토	【반영】자연해안을 훼손을 최소화 되도록 연장 축소 및 선형변경할 계획임. - 연장축소(L=200m →180m)		
	(9) 진도군			
	- 1~13. 작업장 설치 시 폐수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 악화가 예상되는바, 폐수처리계획 제시	【반영】공동작업장은 단순가공으로 폐수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법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설치, 주변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처리 할 계획임.		
- 14.(저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양호한 암반 자연해안 훼손이 예상되는바, 입지 재검토	【반영】저도 소규모어항시설은 암반등의 자연해안훼손을 최소화 되도록 물양장의 규모를 축소토록 계획함.(A=3,100㎡ →2,500㎡)			
- 15.(금호도 방파제 및 물양장 확장) 항내 해수교환율을 저하시키는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미반영>해수교환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규모로 방파제를 설치토록 할 계획임.(L=60m)			
- 27.(동거차도 선착장 정비사업) 항내 해수교환율을 저하시키는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반영】해수교환을 원활히 하고 선박의 원활한 자유롭게 하도록 방파제설치규모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L=60m →50m)			
- 31.(관사해변 경관복구사업) 모래해변의 침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가능 정비계획 제시	<미반영>모래해변침식 방지 및 도로노화방지를 위해 해변도로정비 및 선착장정비, 해수소통구설치를 계획함.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 41.(곽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물양장 설치 계획 수립	【반영】곽도주변의 자연해안훼손을 최소화 시키기위해 물양장의 면적을 축소하여 계획함.(A=1,000㎡→800㎡)	
	- 55.(조도대교 경관개선 사업)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매립면적 최소화	【반영】매립면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공원 및 주차장을 축소하여 계획함.(L=10,000㎡→2,000㎡)	
	(10)신안군		
	- 전체적으로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려운바, 정확한 현황 및 규모 제시 필요	【반영】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현황 및 규모를 제시하였음.	
	- 12~62. 사업위치, 배치계획 등을 전혀 파악하기 어려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설치 시 자연해안 훼손,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및 해수유동변화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제시	【반영】사업위치, 배치계획 등을 제시하였으며, 자연해안 훼손, 해수교환을 저하, 해수유동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12.어의도 어항시설 확충 - 선착장 규모 축소(L=100m→50m)		
	13.선도 선착장 및 물양장 시설 확장 - 선착장 규모 축소(L=60m→30m)		
	14.압해소규모 어민선착장 승상 및 확장 - 선착장 규모 축소(L=300m→280m) - 해수유통구 2개소 설치		
	15.고이도 선착장 승상 및 확장 - 원안 유지(소규모 선착장)		
	16.매화 선착장 승상 및 확장 - 원안 유지(소규모 선착장)		
	17.우관도 물양장 및 진입도로 조성 - 선착장 규모 축소(L=40m→30m)		
	18.증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19.병풍항 선착장 및 물양장 승상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20.임자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21.재원도 선착장 및 호안도로 시설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22.자은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사업 - 해수유통구 2개소 설치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 12~62. 사업위치, 배치계획 등을 전혀 파악하기 어려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설치 시 자연해안 훼손, 항내 해수교환율 저하 및 해수유동변화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제시	23.비금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 원안유지(소규모 어항시설)	
		24.수지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25.도초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 원안유지(소규모 어항시설)	
		26.동소우이도 선착장 및 호안도로 - 선착장 규모 축소(L=30m→20m)	
		27.대흑산도 소규모 어업기반시설 확충 - 원안유지(소규모 어항시설)	
		28.대흑산도 어업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 원안유지	
		29.장도 선착장 및 진입로 정비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30.영산도 물양장 및 진입로 조성 - 물양장 규모 축소(A=200m ² →100m ²)	
		31.대둔도 선착장 및 호안도로 개설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32.다물도 물양장 및 호안도로 개설 - 호안도로 육지확장 - 물양장 규모 축소(A=200m ² →100m ²)	
		33.상태도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34.중태도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35.하태도 선착장 및 호안도로 승상 - 선착장 규모 축소(L=50m→40m)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36.가거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 선착장 규모 축소(L=80m→50m)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37.하의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 물양장 규모 축소(A=300m ² →200m ²)	
		38.장병도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39.능산도 선착장 확장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40.능산도 호안도로 확·포장 - 호안도로 육지확장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 12~62. 사업위치, 배치계획 등을 전혀 파악하기 어려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설치 시 자연해안 훼손, 항내 해수교환율 저하 및 해수유동변화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제시	41.대야도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42.신도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43.옥도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44.장재도 선착장 및 진입도로 조성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45.상하태도 부잔교 설치사업 - 원안유지(소규모 부잔교)	
		46.상하태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 물양장 규모 축소(A=500㎡→200㎡)	
		47.기도 선착장승상 및 확장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48.장산도 선착장 및 물양장 시설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49.백야도 선착장 및 대합실 시설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50.마진도 선착장 승상 및 확장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51.율도 선착장 및 연결도로 개설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52.안좌도 부잔교 설치사업 - 원안유지(소규모 부잔교)	
		53.안좌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 선착장 규모 축소(L=75m→50m)	
		54.자라항 선착장 및 물양장시설 확충 - 선착장 규모 축소(L=50m→40m) - 해수유통구 2개소 설치	
		55.사치선착장 승상 및 확장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56.팔금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 원안유지(소규모 어항시설)	
		57.팔금 백계선착장 물양장 승상 - 원안유지(소규모 선착장)	
		58.초란도 선착장 승상 및 확장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59.당사도 큰석기미선착장 신설 - 해수유통구 1개소 설치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62. 사업위치, 배치계획 등을 전혀 파악하기 어려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설치 시 자연해안 훼손,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및 해수유동변화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제시 	60.암태도 소규모 어항시설 승상 및 확장 - 해수유통구 2개소 설치 61.암태도 부잔교 설치사업 - 원안유지(소규모 부잔교) 62.중부권 광역 여객선착장 조성 - 기 조성된 부지에 선착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중도 해수욕장 경관개선 및 해안탐방로 조성) 탐방로 설치 시 자연해안 및 사빈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수립·제시 	【반영】 탐방로 및 해수욕장 경관개선사업은 육지부에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자연해안 및 사빈의 훼손은 없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병풍도 해안 일주도로 개설)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을 야기하는 도로개설 재검토 	【반영】 현재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해안에 대하여 침식을 방지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는 육지쪽에서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대기점도 갯벌 탐방로 조성)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을 야기하는 탐방로 재검토 	【반영】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활용한 산책로 개념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자연해안의 훼손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95. 노두 정비 시 포장, 확장 등 해수유동을 저하시키는 사업을 제외하고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을 일부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수립 	【반영】 노두 정비 시 해수유동을 저하시키는 포장 및 확장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 시설물의 파손 및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소기점도 노두개선사업) 자연해안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재검토 	【반영】 소기점도 노두개선사업은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내륙 쪽으로만 확장하는 계획으로 자연해안 지역의 훼손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04. 노두 정비 시 포장, 확장 등 해수유동을 저하시키는 사업을 제외하고, 기존 시설물을 일부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수립 	【반영】 노두 정비 시 해수유동을 저하시키는 포장 및 확장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 시설물의 파손 및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압해 갯벌 해변도로 조성) 자연해안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재검토 	【반영】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정비하고 일부 내륙쪽으로만 확장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자연해안의 훼손은 없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가란도 마을연결도로 확포장) 자연해안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재검토 	【반영】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내륙쪽으로만 확장하는 계획으로 자연해안지역의 훼손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2.(박지도 도로 및 배수로 정비) 자연해안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재검토 	【반영】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내륙쪽으로만 확장하는 계획으로 자연해안지역의 훼손은 없음.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 각 부처의 계획만 열거했을 뿐 정합여부를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각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정합여부를 평가·제시하여야 함.	【반영】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 각 부처의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정합여부를 평가·제시하였음.	
	○ 전라남도 각 시·군 환경보전계획, 전라남도 각 시·군 지역연안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연안용도 해역 등)하고 정합여부를 평가·제시하여야 함.	【반영】전라남도 도서종합개발계획 대상인 11개 시군의 지역연안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으며 상위계획에 따른 정합여부를 평가·제시하였음.	
	다. 기타		
○ 개발계획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회 개발계획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지역에서의 개발계획 리스트 등 기초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반영】보전가치가 높은 가)~아)의 항목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지별 해당여부를 파악하고 그 해당여부를 리스트로 작성하여 기초자료로 제시하였음.		
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또는 별도관리지역 나) 양호한 식생군락(식생보전 III등급 이상)이 현존하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 다) 경사도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식생보전 III등급 이상인 지역 라) 계획부지가 현재 산지 또는 녹지 corridor가 형성된 양호한 식생지(식생보전 III등급 이상)와 연결하여 위치하거나 또는 계획부지가 상기 양호한 식생지의 내부를 침투하여 위치한 지역 마) 녹지축 또는 생태축(능선축, 소능선축, 수계, 산간계류 등)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 바) 법정보호지역의 내부 또는 법정보호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100m 이내의 지역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p>사) 법정보호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정 멸종위기종, 「문화재보호법」 지정 천연기념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정 희귀식물, 지자체 지정 보호자원 등 포함)의 서식지 또는 법정보호종의 서식영향권 내의 지역</p> <p>아) 양호한 육수생태계(하천, 소하천, 산간계류, 호소, 저수지 등)의 영향권 범위 내의 지역 등</p>		
환경부	<p>○ 아울러, 아래 사업지별 개발계획의 현황정보와 관련 도면을 아래의 종합자료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제시하여야 함.</p> <p>※ 사업지별 개발계획</p> <p>1) 목포시: 달리도 외달도간 (보행)연도교 설치, 고힌도 해안산책로 조성, 충무공유적지 진입도로 확장 및 경관조성, 달리2구 해안도로개설</p> <p>2) 여수시: 화정면 상화 호안도로 개설 및 방파제 보강, 화정면 낭도 여산갯벌체험장 조성, 화정면 둔병도 해양체험장 조성, 화정면 개도 신규탐방로 개설, 화정면 여자리 둘레길 조성사업, 삼산면 손죽도 탐방로 조성사업, 삼산면 거문도(고도) 해안길(둘레길) 조성사업, 삼산면 동도 탐방로(능선) 조성사업, 남면 모하 복합관광단지 신설, 남면 화태 관광편의 시설 설치, 화정면 하화 공동산공원조성사업, 화정면 사도 관광기반시설 리모델링 사업, 묘도동 조·명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화정면 개도 화산 운구지~여석 도로개설, 삼산면 거문도 변촌~장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남면 연도 친환경생태 섬 조성사업</p>	【반영】아래 사업지별 개발계획의 현황정보와 관련 도면을 아래의 종합자료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제시하였음.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p>3) 고흥군: 득량도 선창 해안 일주도로 사업, 득량도 관청 해안 일주도로사업, 시산도 해안 일주도로사업, 하화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연흥도 해안경관도로 정비사업, 애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거금도 동정~월포간 경관도로 조성사업, 사양도 선창 해안도로 개설</p> <p>4) 해남군: 하낙월도 돌레길 조성공사</p> <p>5) 완도군: 흑일도-흑일 호안도로 시설, 금당도- 울포항~차우항 생태탐방로 설치, 생일도- 금곡지구 관광단지 조성</p> <p>6) 진도군: 하조도 수산물 직판장 조성</p> <p>7) 신안군: 증도 중심도로 수변공원 조성, 증도 해수욕장 경관개선 및 해안탐방로 조성, 자은 아름다운 해수욕장공원 조성사업, 비금 명품해변탐방로 조성, 대흑산도 탐방로 조성, 대흑산도 관광객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흥도 문화생태탐방로 및 선착장 조성, 가거도 해안탐방로 조성, 대야도 생태탐방로 조성, 안좌도 섬암석 공원 조성, 박지도 가고싶은섬 테마공원 조성, 반월도 가고싶은섬 테마공원 조성, 신안 중부권 테마관광단지 및 기반시설조성, 압해 복룡가룡간 도로개설, 압해읍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 압해 갯벌 해변도로 조성, 가란도 마을연결도로 확포장, 소악도 마을 연결도로 개선, 임자도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 도초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 우이도 마을연결도로 개설, 능산도 마을안길 개설 및 확포장, 암태도 주요간선도로 위험구간 개선</p>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p>※ 종합자료 작성방법 : 도면(한글, pdf 또는 ppt 파일형식)은 PC모니터에서 화면을 300%이상 확대하였을 때, 도면의 Contents[명칭, 부지경계선, 해당 용도, 해당 등급, 수계(하천, 농수로, 산간계류 등) 등]를 명확히 인지·구분·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로 작성하고 자료(도면)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계획부지의 (1) 기정 및 변경용도가 표시된 도면 (2) 해상도 높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3) 생태·자연도 (4) 식생보전등급(III등급 이상 지역만 표시) 도면 (5) 경사도면(경사도 20° 이상 지역만 표시) (6) 국토환경성평가도 (7) 법정보호종 서식·도래지 도면 (8) 대규모 집단 이동 조류의 도래지 도면</p>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p>○ 금회 개발도서명이 기입된 도면과 자연공원(지질공원 포함) 및 특정도서를 하나의 중첩된 도면으로 제시하고</p> <p>- 금회 개발도서의 자연공원 포함(지질공원 포함)여부, 특정도서 포함여부, 이격거리 등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행위제한 여부를 분석·제시하여야 함.</p> <p>○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해수부가 해양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고시('14.12월)한 해양생태도 등급을 제시.</p>	<p>【반영】금회 개발도서명이 기입된 도면과 자연공원(지질공원 포함) 및 특정도서를 하나의 중첩된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음.</p> <p>【반영】금회 개발도서의 자연공원 포함(지질공원 포함)여부, 특정도서 포함여부, 이격거리 등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p> <p>【반영】「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해수부가 해양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고시('14.12월)한 해양생태도 등급을 제시하였음.</p>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환경부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사업은 별도 구분하여 사업규모, 조망점 등을 고려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경관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을 검토·제시.	【반영】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사업은 별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사업규모, 조망점 등을 고려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경관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동·식물상 문헌조사를 하였으나 조사가 부정확*하므로 사업 및 분류군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영향예측 결과,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고흥군 거금도, 여수시 금오도, 강진군 등 좀수수치(멸종Ⅱ급)현황 등 누락	【반영】사업 및 분류군 특성을 고려하여 최신자료를 통한 문헌조사 및 영향예측 결과,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나. 수환경의 보전																											
	○ 아래의 개발계획*은 필요한 생활용수 수요량을 파악하여 배수지로부터 용수공급 가능 여부와 오수 발생량을 예측하여 공공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방안을 검토하되 불가피하게 자체처리 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제시하여야 함.	【반영】본 계획지역은 시설물 설치 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 상수를 공급하고, 적법한 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임.																										
* 남면 모하 복합관광단지 신설(258쪽), 남면 화태 관광편의 시설 설치(260쪽), 남면 두포, 심포 비렁길 휴게소 설치(257쪽) 및 화정면 개도 호혈 휴게소 설치(262쪽), 묘도동 조·명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272쪽)	【반영】오수발생량 및 용수공급량 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면적 (㎡)</th> <th>오수 발생 원단위</th> <th>오수 발생량 (㎡/일)</th> <th>용수 공급량 (㎡/일)</th> </tr> </thead> <tbody> <tr> <td>139</td> <td>500</td> <td rowspan="5">20L/㎡</td> <td>10.0</td> <td>11.4</td> </tr> <tr> <td>140</td> <td>2,500</td> <td>50.0</td> <td>56.8</td> </tr> <tr> <td>142</td> <td>2,500</td> <td>50.0</td> <td>56.8</td> </tr> <tr> <td>144</td> <td>500</td> <td>10.0</td> <td>11.4</td> </tr> <tr> <td>154</td> <td>30,000</td> <td>600.0</td> <td>681.8</td> </tr> </tbody> </table>	No	면적 (㎡)	오수 발생 원단위	오수 발생량 (㎡/일)	용수 공급량 (㎡/일)	139	500	20L/㎡	10.0	11.4	140	2,500	50.0	56.8	142	2,500	50.0	56.8	144	500	10.0	11.4	154	30,000	600.0	681.8	
No	면적 (㎡)	오수 발생 원단위	오수 발생량 (㎡/일)	용수 공급량 (㎡/일)																								
139	500	20L/㎡	10.0	11.4																								
140	2,500		50.0	56.8																								
142	2,500		50.0	56.8																								
144	500		10.0	11.4																								
154	30,000		600.0	681.8																								
* 생일도-금곡지구 관광단지 조성(512쪽)	【반영】완도군 해당 사업(생일도-금곡지구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오수 발생량을 예측 및 용수공급 가능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오수처리계획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제시함.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 신안 중부권 테마관광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694쪽),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757쪽)	【반영】신안 중부권 테마관광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694쪽),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757쪽)은 현재 기본계획 단계로 세부적인 공급·처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시 세부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할 계획임. 한편 불가피 하게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처리 후 방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환경부	다.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평가서(1659-1672쪽)에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에 대한 목록을 단순 제시하였으나, 개발계획 내용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계획에 따른 영향예측과 보전대책 등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	【반영】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에 대한 목록과 개발사업별 해당여부를 파악하고, 개발계획 내용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른 영향예측과 보전대책 등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라. 생활환경의 안전성		
	○ 도서내 개발계획으로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발생 시 1차적으로 해상운송을 통해 폐기물을 내륙으로 운반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의 해상운송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임시보관 계획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반영】도서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를 계획 중이며, 도서별 임시보관소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는 임시보관소를 설치하고 일정 주기(ex. 주 1~2회)를 선정하여 선박으로 수거하여 처리토록 계획함.	

(2)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Ⅱ. 검토의견		
	○ 본 건은 전라남도의 개발대상도서 및 이외 관리도서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검토 의견임.	-	
	○ 금회 개발사업 예정지 중 생태·자연도 1등급지 또는 별도관리지역, 양호한 식생군락(식생보전 Ⅲ등급 이상)이 현존하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 경사도 20°이상인면서 동시에 식생보전 Ⅲ등급 이상인 지역, 녹지축 또는 생태축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 법정보호종의 서식 영향권 내의 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계획된 개발사업지는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하여야 함.	【반영】개발사업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였음.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에 대한 목록이 각 도서별 분포 현황 및 세부 계획내용과 관련하여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서 84쪽 도서종합 개발사업 사업별 내용에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해안 지형, 특이지형 및 지질 등)에 대하여 중첩하여 제시하여야 함.	【반영】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에 대한 목록을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해안 지형, 특이지형 및 지질 등)에 대하여 중첩하여 제시하였음.	
	- 제시된 사업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계획된 개발사업지는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지역을 제척 또는 저감방안 제시.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계획된 개발사업지는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의 축소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였음.	
	○ 호안도로 조성사업은 자연해안을 인공화하여 해연경관을 훼손하고 육지와 해안간의 생태적 연결성을 단절시키므로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업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끝.	【반영】호안도로를 비롯하여 해안선과 인접하여 계획되어진 도로계획은 해안선과 최대한 이격하고, 내륙 측으로 선형을 변경, 기 조성된 도로의 유무를 확인 후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을 검토·수정하여 자연해안을 훼손하지 않도록 반영함.	

(3) 전라남도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전라남도	□ 검토의견		
	○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해야 함.	【반영】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 향후 각각의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승인 시 20일 이내에 부과기관인 우리도 동부지역본부(환경보전과)에 승인내역(또는 변경면적)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제43조에 따른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이상인 개발사업	【반영】「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전라남도 환경보전과에 승인내역(또는 변경면적)을 제출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겠음.	
	○ 공사시행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보전해역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에 반영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반영】공사시행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보전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오탁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공사 시 식물 군락의 훼손·변화 및 육상동물상의 서식지 훼손,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예상되므로 식생 훼손 최소화, 법면 안정화 등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반영】공사 시 식물 군락의 훼손·변화 및 육상동물상의 서식지 훼손,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식생 훼손 최소화, 법면 안정화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공사 시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반영】공사 시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전라남도	○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전 주민설명 등으로 민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반영】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음.	
	○ 공사 및 시설 운영 시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에 대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공사 및 시설 운영 시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분뇨 등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토록하겠음.	
	○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반영】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업시행 사전에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 상수도 및 하수도는 사업 시·군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행해야 함.	【반영】상수도 및 하수도는 사업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 물양장, 방파제 등의 어항개발과 연계하여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해야 함.	【반영】물양장, 방파제 등의 어항개발과 연계하여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음.	
	○ 둘레길 조성 사업 등은 도서지역의 자연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위적인 시설 설치의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반영】둘레길 조성 사업 등은 도서지역의 자연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위적인 시설 설치의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공사중지, 민원적극해결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끝.	【반영】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공사중지, 민원적극해결 등)을 신속히 강구하여 시행하겠음.	

(4) 관계 전문가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목포해양대 김도희교수	<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 정부 및 지역별 개발계획과 관련된 상위법과 개발계획의 검토가 미흡함. 예를 들면, 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지역 확대계획 등.	【반영】개발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도서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이 요구됨. 현재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발사업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반영】도서별 실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 향후 10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이 미흡함.	【반영】도서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심의 의견		
	가) 평가항목 및 방법(7~9페이지): 해양환경 예측 평가방법이 미흡함. 문헌 및 유사 사례 외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및 선진사례 분석이 요구됨.	【반영】계획도서 인근의 최신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 후 실시설계 시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여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겠음.	
	나) 669페이지: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일대 주민문화공간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 및 목적이 불명확함.	【반영】임자도 주민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여가체육시설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다) 8.2.6 수환경보전, 해양환경 (2064~2465페이지): 문헌 및 유사 사례 외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및 선진사례분석이 요구됨. 최근 문헌이 없을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요구됨. 연도교, 연육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이 미흡함.	【반영】계획도서 인근의 최신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 후 실시설계 시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여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라) 8.3.5 자원, 에너지순환의 효율성 (2570페이지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확충과 자원절감 방안이 미흡하고, 빗물 사용, 부산물 재활용 계획 등이 미흡함.	【반영】개발계획에 따른 추후 실시설계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자원절감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5) 진도군

기관명	협의의견	반영여부	비고
진 도 군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1988년부터 시작된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1~3차)의 추진성과, 문제점,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개발정책의 정책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도서개발계획의 계획과제를 도출, 도서 여건변화 및 새로운 사업수요 요구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임.	-	
	○ 본 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단계로 향후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물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협의를 득하여야 함.	○ <반영>본 사업은 현재 개발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의 대상여부를 파악한 결과, 25, 56, 57번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었으며, 50 번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향후 실시설계단계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협의를 득할 계획임.	p.3072 -3074
	○ 본 개발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반영>본 개발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제시함.	p.1251 -1336
	○ 본 의견을 포함한 관계기관 초안검토의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 등의 의견은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 등을 본안에 제시하여야 함.	○ 본 의견을 포함한 관계기관 초안검토의견(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진도군) 및 주민설명회(2017년 9월 22일)를 통해 제시된 주민 등의 의견은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 등을 본안에 제시함.	p.1173 -1247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관련 공문


(1) 환경부

<div style="text-align: center;">  <h3>환경부</h3> <p>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전라남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알림</p> <p>1. 전라남도 해양항만과-14062(17.9.6.)호와 관련입니다. 2.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전라남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동 사업의 협의 진행현황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관련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붙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1부, 끝.</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환경부장</p> <p>수신자 전라남도지사(해양항만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주무관</td> <td>조현형</td> <td>환경사무관</td> <td>장우용</td> <td>과장</td> <td>김을 2017. 10. 17.</td> </tr> <tr> <td>협조자</td> <td></td> <td></td> <td></td> <td>유승갑</td> <td></td> </tr> </table> <p>시행 국토환경평가과-2151 (2017. 10. 17.) 접수 해양항만과-16254 (2017. 10. 17.)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환경평가과 (여진동)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00 팩스번호 044-201-7304 / star4588@korea.kr / 비공계(5)</p> </div>	주무관	조현형	환경사무관	장우용	과장	김을 2017. 10. 17.	협조자				유승갑		<div style="text-align: center;"> <h3>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h3> <p>【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전라남도)】 (11쪽)</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 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명 :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전라남도) ○ 위 치 : 전라남도(11개시·군, 215개 도서, 721개 사업) ○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 : 전라남도/행정안전부 ○ 계획기간 : 2018 ~ 2027년 </div> <p>I.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세부 개발계획별 입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서 본안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각 도서별 개발·정비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환경영향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세부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 본안작성 시 세부 개발계획별도 향후 환경영향평가(전략 또는 소규모) 대상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p>II. 항목별 검토의견</p> <p>1. 계획의 적정성</p> <p>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비수립사를 비교하여 형식적 대안 비교가 이루어졌는 바, 본 계획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각각의 대안 비교를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개발계획 내용에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제시되어야 함.
주무관	조현형	환경사무관	장우용	과장	김을 2017. 10. 17.								
협조자				유승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에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대부분의 세부 개발계획이 사업 필요성이 낮으므로 계획지역 등록 어선수 등을 기초로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 되어야 함. - 사업지 현황과 사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확대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현황 및 사업규모(진도권 사계 절조)를 제시하여야 함. ○ 자동차 통행편의를 위해 계획된 일주도로의 경우 취락지구 간 연결성 확보, 관광지 간 연결성 확보, 항구와 취락지구 혹은 관광지 간 연결성 확보 등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다음의 개발계획은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을 재검토 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여야 함. <p>1) 목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달리도 방파제 조성) 해수유동 변화로 규모 축소 10. 11. (장척도 선착장 및 물양장 조성)해안침식 유발로 사업 재검토 19.(고하도 해안신복로 조성)자연 해안선을 훼손하지 않도록 육상 축으로 계획 21.(해수유동 주변 환경개선) 자연해안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 23.(외달도 등대 보행로) 조간대 암반 훼손 발생으로 사업 재검토 24.(충무공유적지 진입도로 확장 및 경관조성)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훼손에 따른 사업 재검토 26.(달리 2구 해안도로 개설)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훼손에 따른 사업 재검토 27.(달리도 선착장·쭈박섬간 연결도로 개설) 자연해안 훼손에 따른 사업 재검토 <p>2) 여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남면 화태리 마죽항 위 선착장 연장) 해수유동 변화로 사업 재검토 9.(화정면 개도 여석 선착장 연장 및 파라넷 설치)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규모 축소 12.(화정면 여저리 마파선착장 정비 및 파제제 설치)해수유동 변화로 규모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화정면 여저리 대동 선착장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규모 축소 17.(소정면 도선 선착장 뒤편 방파제 설치) 자연해안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치로 입지 재선정 20.(남면 직포마을 남방파제 연장)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를 위한 규모 축소 21.(남면 직포마을 북방파제 연장) 직포해수욕장 해안침식 영향에 따른 사업 재검토 23.(남면 송고마을 방파제 연장)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방파제 연장 최소화 24.(남면 여천마을 방파제 연장) 방파제 연장 시 내측 방파제 일부 철폐방안 수립 25.(남면 대유마을 방파제 연장)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방파제 연장 최소화 36.(남면 화태리 마죽항 방파제 정비) 방파제 위치 조정 시 기존 방파제 제거 검토 39.(남면 화태리안센터 앞 접안시설 설치) 접안시설 설치에 따른 항내 해수 교환을 저하로 시설설치 최소화 40.(남면 화태 뱃전마을 외길 호안도로 설치)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방안 검토 41.(남면 횡간도 방파제 연장) 해수유동 변화로 규모 축소 45.(화정면 개도 화산 방파제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사업 재검토 49.(화정면 여저리 대동 방파제 설치)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사업 재검토 51.(화정면 여저리 산 142번지 앞 방파제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사업 규모 최소화 54.(화정면 추도 선착장 및 호안도로 정비) 자연해안이 최소화 되도록 위한 기존 선착장 정비방안 수립 및 시설설치 최소화 79.(화정면 상화 호안도로 개설 및 방파제 보강) 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호안도로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80.(화정면 상하여객선 열 호안도로 개설) 양호한 양반의 자연해안 훼손이 크므로 사업 재검토 85.(화정면 적금 호안도로 정비공사) 자연해안 지역을 배제한 인공해안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자연해안지역의 경우 해안과 이격하는 방안 검토 89.(화정면 개도 신흥 체험장 조성 및 등덕골 호안도로 연장) 양호한 자연 해안 훼손이 크므로 발생하는바, 사업 재검토 91.(화정면 제도 조급남 선착장 호안도로 개설) 자연해안지역을 배제한 도로 개설방안 검토 												

<p>137.(삼산면 동도 탐방로 조성) 해안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돌레길 조성방안 검토</p> <p>146.(화정면 사도 관광기반시설 설치) 암반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배제하는 방안 검토</p> <p>155.(남면 두포마을 해안도로 개설) 자연해안지역을 배제한 도로개설 검토</p> <p>172.(화정면 상차 마을안길 보편) 양호한 암반의 자연해안 훼손이 크게 발생 되도록 사업재검토</p> <p>175, 176(화정면 둔방도 및 적금도 마을진입로 개설) 자연해안지역을 배제한 도로개설 검토</p> <p>181(삼산면 거문도 변촌~장촌간 도로 확보장공사) 자연해안지역을 배제한 도로개설 검토</p> <p>(3) 고흥군</p> <p>5.(특랑도 선창항 선착장 점안시설 및 방파제 보강) 방파제 연장외의 경우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소화방안 검토</p> <p>6.(시산도 석굴 소규모항 및 해안도로 정비) 자연 암반 해안지역에 대한 도로정비 재검토</p> <p>16.(죽도 물양장 조성) 자연암반지역에 대한 물양장 설치 재검토</p> <p>18.(시양도 선창항 방파제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로 방파제 연장 최소화 검토</p> <p>30.(수림도 도선 건조사업) 사빈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계획 재검토</p> <p>32.(득림도 선창 해안 일주도로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p> <p>33.(득림도 관청 해안 일주도로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p> <p>34.(시산도 해안 일주도로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p> <p>35.(하화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p> <p>38.(연흥도 해안경관도로 정비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p> <p>39.(매도 해안경관도로 정비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p> <p>42.(우도 바닷길 보강사업) 깎벌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획 수립 제시</p> <p>51.(시양도 선창 해안도로 개설)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p> <p>(4) 보성군</p> <p>8.(옥섬 어장 진입로 개설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으로 해안도로 설치 재검토</p>	<p>(5) 강진군</p> <p>5.(가우도 돌레길 조성) 돌레길 조성 시 자연해안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안 제시</p> <p>6.(보행자 목재데크 설치) 목재데크 설치 시 자연해안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방안제시</p> <p>(6) 해남군</p> <p>1.(화산 상마도 방파제 설치)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방안 제시</p> <p>4.(화산 상마도 물양장 조성) 자연암반해안 훼손을 이기하는 물양장 조성 재검토</p> <p>5.(화산 중마도 방파제 설치) 해수유동변화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규모 축소방안 제시</p> <p>7.(화산 하마도 방파제 설치)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0m로 계획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 방안 제시</p> <p>(7) 무안군</p> <p>1.(탄도 호안 정비사업)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을 이기하는 호안 설치 재검토</p> <p>5.(탄도 해안탐방데크 설치) 해안탐방데크 설치 시 자연해안 훼손이 이루어 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방안 제시</p> <p>(8) 완도군</p> <p>11.(평일~신수지구 소규모 어항정비사업)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설치규모 최소화</p> <p>12.(평일~척치지구 소규모 어항정비사업)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설치규모 최소화</p> <p>13.(평일~월송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p> <p>14.(평일~장정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p> <p>16.(평일~사동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p> <p>17.(평일~장원지구 소규모 어항정비)해수유동 변화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p>
<p>설치규모 최소화</p> <p>18.(평일~충동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를 위한 방파제 설치규모 최소화</p> <p>21.(노화~고막리 선착장 시설) 해수유동 변화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선착장 연장</p> <p>24.(노화~중도리 선착장 연장) 해수유동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착장 연장 규모 최소화</p> <p>25.(노화넙도~선착장 연장) 해수유동 변화 최소화하기 위한 선착장 연장 규모 최소화</p> <p>26.(서넙도~소규모 어항시설)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p> <p>29.(미안도 선착장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착장 연장</p> <p>30.(어룡도 소규모 어항시설) 해수유동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착장 연장 규모 최소화</p> <p>33.(고미도 선착장 확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착장 연장</p> <p>35.(흑일도 호안도로 시설) 자연암반해안 훼손을 이기하는 호안도로 연장 재검토</p> <p>37.(백일도 방파제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p> <p>38.(서화도 방파제 연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p> <p>41.(청신도 소규모 어항정비) 해수유동 변화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선착장 연장</p> <p>44.(소안도 이월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해수유동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항 시설 연장 규모 최소화</p> <p>48.(소안도~진산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설치 규모 최소화</p> <p>52.(구도~구도 소규모 어항정비) 해수유동 변화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선착장 연장</p> <p>53.(금당도~저우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시키는 방파제 설치 재검토</p> <p>56.(금당도~신흥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시키는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p> <p>62.(보길도~보길 어항리 선착장 설치) 자연해안에 대한 선착장설치 재검토</p> <p>64.(보길도~보길 선백도 지구 소규모 어항정비)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시키는 방파제 설치 최소화</p>	<p>65.(보길도~보길 월송리 선착장 설치)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착장 설치</p> <p>66.(보길도~보길 정동리 소규모 어항시설)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착장 설치</p> <p>70.(보길도~보길 총리 물양장 설치) 자연해안을 훼손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물양장 설치</p> <p>71.(예작도~보길 예작 소규모 어항시설) 자연해안을 훼손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물양장 설치</p> <p>97.(노죽도~노죽도 진입도로) 양호한 암반 자연해안을 훼손시키는 도로사업 재검토</p> <p>(9) 진도군</p> <p>1~13. 작업장 설치 시 폐수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 악화가 예상되는데, 폐수 처리계획 제시</p> <p>14.(저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양호한 암반 자연해안 훼손이 예상되는데, 임지 재검토</p> <p>15.(금호도 방파제 및 물양장 확장)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시키는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p> <p>27.(동거차도 선착장 정비사업)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시키는 방파제 설치 규모 최소화</p> <p>31.(관사해변 경관복구사업) 모래해변의 침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구가 정비 계획 제시</p> <p>41.(력도 소규모 어항시설 확충) 자연해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물양장 설치계획 수립</p> <p>55.(조도대교 경관개선 사업)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매립면적 최소화</p> <p>(10) 신안군</p> <p>전체적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우나, 정확한 현황 및 규모 제시 필요</p> <p>12~62. 사업위치, 배치계획 등을 전혀 파악하기 어려움.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설치 시 자연해안 훼손, 항내 해수교환을 저하 및 해수유동변화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제시</p> <p>72.(중도 해수욕장 경관개선 및 해안탐방로 조성) 탐방로 설치 시 자연해안 및 사빈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수립·제시</p> <p>73.(병풍도 해안 일주도로 개설)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을 이기하는 도로개설 재검토</p>

<p>74.(대기질도 갯벌 탐방로 조성) 양호한 자연해안 훼손을 야기하는 탐방로 재검토</p> <p>92~95. 노두 정비 시 포장, 확장 등 해수유동을 저하시키는 사업을 제외하고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을 일부 정비하는 자원에서 계획수립</p> <p>96.(소기질도 노두개선사업) 자연해안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재검토</p> <p>97~104. 노두 정비 시 포장, 확장 등 해수유동을 저하시키는 사업을 제외하고, 기존 시설물을 일부 정비하는 자원에서 계획수립</p> <p>108(압해 갯벌 해변도로 조성) 자연해안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재검토</p> <p>112(가린도 마을연결도로 확포장) 자연해안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재검토</p> <p>142(박지도 도로 및 배수로 정비) 자연해안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재검토</p> <p>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 각 부처의 계획만 열거 했을 뿐 종합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각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종합여부를 평가·제시하여야 함. ○ 전라남도 각 시·군 환경보전계획, 전라남도 각 시·군 지역연안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연안운동 해역 등)하고 종합여부를 평가·제시하여야 함. <p>다.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금회 개발계획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지역에서의 개발계획 리스트 등 기초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또는 별도관리지역 나) 양호한 식생군락(식생보전 III등급 이상)이 현존하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 다) 경사도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식생보전 III등급 이상인 지역 라) 계획부지가 현재 산지 또는 녹지 corridor가 형성된 양호한 식생지(식생보전 III등급 이상)와 연결하여 위치하거나 또는 계획 부지가 상기 양호한 식생지의 내부를 침투하여 위치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녹지축 또는 생태축(농선축, 소농선축, 수계, 산간계류 등)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 바) 법정보호지역의 내부 또는 법정보호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100m 이내의 지역 사) 법정보호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정 멸종위기종, 「문화재보호법」 지정 천연기념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정 희귀식물, 지자체 지정 보호자원 등 포함)의 서식지 또는 법정보호종의 서식 영향권 내의 지역 아) 양호한 육수생태계(하천, 소하천, 산간계류, 호소, 저수지 등)의 영향권 범위 내의 지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아래 사업지별 개발계획의 현황정보와 관련 도면을 아래의 종합자료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별 개발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사: 달리도 외달도간 (보행)연도교 설치, 고하도 해안산책로 조성, 충무공유적지 진입도로 확장 및 경관조성, 달리2구 해안도로개설. 2) 여수시: 화정면 상화 호안도로 개설 및 방파제 보강, 화정면 남도 여산갯벌체험장 조성, 화정면 운봉도 해양체험장 조성, 화정면 개도 신규 탐방로 개설, 화정면 여자리 돌레길 조성사업, 삼산면 순죽도 탐방로 조성사업, 삼산면 거문도(고도) 해안길(돌레길) 조성사업, 삼산면 동도 탐방로(농선) 조성사업, 남면 모하 복합관광단지 신설, 남면 화태 관광편의 시설 설치, 화정면 하화 공동산 공익조성사업, 화정면 사도 관광 기생시설 리모델링 사업, 오도동 조영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화정면 개도 화산 운구지*여석 도로개설, 삼산면 거문도 변촌*장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남면 연도 친환경생태 섬 조성사업 3) 고흥군: 득량도 선창 해안 일주도로사업, 득량도 관청 해안 일주도로사업, 시산도 해안 일주도로사업, 하화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연흥도 해안경관도로 정비사업, 예도 해안경관도로 개설, 거금도 동창*월포간 경관도로 조성사업, 사량도 선창 해안도로 개설 4) 해남군: 하낙빌도 돌레길 조성공사,
<p>5) 완도군: 흑일도-흑일 호안도로 시설, 금당도- 울포항*차우항 생태탐방로 설치, 생일도- 금곡지구 관광단지 조성,</p> <p>6) 진도군: 하초도 수산물 직판장 조성,</p> <p>7) 신안군: 중도 중심도로 수변공원 조성, 중도 해수욕장 경관개선 및 해안탐방로 조성, 자은 아름다운 해수욕장공원 조성사업, 비금 영흥해변 탐방로 조성, 대흑산도 탐방로 조성, 대흑산도 관광객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흥도 문화생태탐방로 및 선착장 조성, 가거도 해안탐방로 조성, 대이도 생태탐방로 조성, 안좌도 섬 암석 공원 조성, 박지도 가고실은섬 테마공원 조성, 반월도 가고실은섬 테마공원 조성, 신안 중부권 테마관광단지 및 기반시설조성, 압해 북쪽 가름간 도로개설, 압해읍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 압해 갯벌 해변도로 조성, 가린도 마을연결도로 확포장, 소억도 마을 연결도로 개선, 임자도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 도초 진입도로 및 배수로 정비, 우이도 마을연결도로 개설, 능산도 마을안길 개설 및 확포장, 압태도 주요간선도로 위험구간 개선</p> <p>※ 종합자료 작성방법 : 도면(한글, pdf 또는 ppt 파일형식)은 PC모니터에서 화면을 300%이상 확대하였을 때, 도면의 Contents(명칭, 부지경계선, 해당용도, 해당 등급, 수계(하천, 농수로, 산간계류 등) 등)를 명확히 인지·구분·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로 작성하고 자료(도면)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계획부지의 (1) 기정 및 변경용도가 표시된 도면 (2) 핵심도 높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3) 생태·자연도 (4) 식생보전등급(III등급 이상 지역만 표시) 도면 (5) 경사도(경사도 20° 이상 지역만 표시) (6) 국토환경성평가도 (7) 법정보호종 서식·도래지 도면 (8) 대규모 집단 이동 조류의 도래지 도면</p> <p>2. 입지의 타당성</p> <p>가. 자연환경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개발도서명이 기입된 도면과 자연공원(지질공원 포함) 및 특정도서를 하나의 중첩된 도면으로 제시하고 - 금회 개발도서의 자연공원 포함(지질공원 포함)여부, 특정도서 포함 여부, 이격거리 등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행위제한 여부를 분석·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수부가 해양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고시(「14.12.11」)한 해양생태도 등급을 제시.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사업은 별도 구분하여 사업규모, 조망점 등을 고려한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경관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검토·제시. ○ 동·식물상 문헌조사를 하였으나 조사가 부정확*하므로 사업 및 분류군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영향예측 결과,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흥군 거금도, 여수시 금오도, 강진군 동룡수수치(멸종급)변환 등 노력 나. 수환경의 보전 ○ 아래의 개발계획*은 필요한 생활용수 수요량을 파악하여 배수지로부터 용수공급 가능 여부와 오수 발생량을 예측하여 공공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방안을 검토하되 불가피하게 자체처리 할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설정·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면 모하 복합관광단지 신설(258쪽), 남면 화태 관광편의 시설 설치(260쪽), 남면 두포, 심포 비월길 휴게소 설치(257쪽) 및 화정면 개도 호월 휴게소 설치(262쪽), 모도동 조영연합수군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272쪽), 생일도-금곡지구 관광단지 조성(512쪽), 신안 중부권 테마관광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694쪽),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757쪽) 다.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평가서(1659-1672쪽)에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에 대한 목록을 단순 제시하였으나, 개발계획 내용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계획에 따른 영향예측과 보전대책 등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 라. 생활환경의 안전성 ○ 도서내 개발계획으로 건설계획물과 생활폐기물 발생 시 1차적으로 해상운송을 통해 폐기물을 내륙으로 운반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의 해상운송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임시보관 계획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끝.

(2)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신 전라남도지사(해양수산과장)
(감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회신[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 전라남도 해양수산과-14062(2017.9.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도에서 검토 요청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불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반영·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	남창균	주무관	변가	과장	박남진	환경관리과장	김영 2017. 10. 30.
합조자							
시험	환경유기과-6604	(2017. 10. 30.)	검수	해양수산과-17073	(2017. 10. 30.)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우송동, 영산강유역환경청) / http://yeongsang.me.go.kr						
전화번호	062-410-5253		팩스번호	062-410-5249		/ ncoibup@korea.kr / 비공개(5)	

주소: 순리카드 해양빌딩4-17073 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I. 사업개요

- 계획 명 :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 위 치 : 전라남도 11개 시·군, 215개 도서
- 목포시, 여주시,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계획규모 : 시군별 사업건수

시·군	목포	여수	고흥	보성	강진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진도	신안
건수	34	189	66	15	8	9	6	18	125	99	152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2조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 계획수립자·승인기관 : 전라남도·행정안전부


II. 검토의견

- 본 건은 전라남도의 개발대상도서 및 이의 관리도서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검토 의견임
- 급회 개발사업 예정지 중 생태·자연도 1등급지 또는 별도관리지역, 양호한 식생군락(식생보전 III등급 이상)이 현존하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 경사도 20° 이상이면서 동시에 식생보전 III등급 이상인 지역, 녹지축 또는 생태축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 법정보호종의 서식영향권 내의 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계획된 개발사업지는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하여야 함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에 대한 목록이 각 도서별 분도 현황 및 세부 계획내용과 관련하여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서 84쪽 도서종합 개발사업 사업별 내용에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해안 지형, 특이지형 및 지질 등)에 대하여 중첩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시된 사업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계획된 개발사업지는 계획의 적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지역을 제척 또는 저감방안 제시.

○ 호안도로 조성사업은 자연해안을 인공화하여 해연경관을 훼손하고 육지와 해안간의 생태적 연결성을 단절시키므로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업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끝.

(3) 전라남도



전라남도



수신 해양환경과장 (경유)
제목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의견 회신

1. 해양환경과-14062(2017. 9. 6.) 관련입니다.
 2.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 현황

- 계획명 :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 위치 : 전라남도 11개 시·군, 215개 도서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계획기간 : 2018년 ~ 2027년
- 시행자/승인자 : 전라남도/행정안전부

□ 검토 의견

-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해야 함.
- 향후 각각의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 협의권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승인시 20일 이내에 부과기관인 우리 도 동부지역본부(환경보전과)에 승인내역(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 제출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제43조에 따른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
- 공사 시행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보전해역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 효과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에 반영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사시 식물 군락의 훼손·변화 및 육상동물상의 서식지 훼손,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예상되므로 식생 훼손 최소화, 법면안정화 등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아저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실수, 세공 및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 주민 설명 등으로 민원 발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공사 및 시설 운영 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에 대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상수도 및 하수도는 사업 시·군 수도성비기본계획, 하수도성비기본계획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행해야 함.
- 물양장, 방파제 등의 어항개발과 연계하여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해야 함.
- 물레길 조성 사업 등은 도서지역의 자연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위적인 시설 설치는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공사중지, 민원 적극 해결 등)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도 민 소 통 표 형 식

주무관	보내명	환경영향평가팀	박인상	도민소통담당관	2017. 9. 27.
합조자				도민소통담당관	2017. 9. 27.
시행	도민소통실-15882			합수 해양환경과-15520	(2017. 9. 28.)
주소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2354	팩스번호	061-286-4732	/ dhwid@korea.kr	/ 무안군계(6.7)

이력은 불참합니다 !

(4) 관계 전문가 및 지자체

[별지 제1호서식]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심의 결과

전라남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제출일자: 2017. 10. 13
 검토자 : 목포해양대학교 직책(급): 교수

성 명 : 김 도 희

□ 총괄 의견

- 정부 및 지역별 개발계획과 관련된 상위법과 개발계획의 검토가 미흡함. 예를 들면, 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지역 확대계획 등.
- 도시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이 요구됨. 현재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발사업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향후 10년의 일차적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이 미흡함.

□ 세부 심의 의견

가) 평가항목 및 방법(7~9페이지): 해양환경 예측 평가방법이 미흡함. 문헌 및 유사 사례 의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및 선진사례 분석이 요구됨.

나) 669페이지: 선안군 일차면 대끼리 일대 주민문화공간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 및 목적이 불명확함.

다) 8.2.6 수환경보전,해양환경 (2064~2465페이지): 문헌 및 유사 사례 의 현장조사와 시뮬레이션 및 선진사례분석이 요구됨. 최근 문헌이 없을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요구됨. 연도교, 연육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이 미흡함.

라) 8.3.5 자원, 에너지순환의 효율성(2570페이지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자원절감 방안이 미흡하고, 빗물 사용, 무산물 재활용 계획 등이 미흡함.

6. 기타의견: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 사업개요

- 계획명 : 전라남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 시간적 범위(계획기간) : 2018 ~ 2027년
- 계획수립기관 : 전라남도
- 승인기관 : 행정안전부
- 근거법령 : 「도시개발촉진법」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11개 시·군, 215개 도서 - 진도군 33개 도서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도시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1968년부터 시작된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1~3차)의 추진성과, 문제점,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정책의 정책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의 계획과제를 도출, 도시 여건 변화 및 새로운 사업수요 요구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출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단계로 향후 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실시단계 단계에서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한 후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향후 실시단계단계에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관련법에 따라 별도로 협의를 득하여야 함
- 본 개발계획 수립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본 의견을 포함한 관계기관 초안검토의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주민 등의 의견은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 등을 본안에 제시하여야 함